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02
----------	-----

발의년월일 : 2014년 11월 14일

발 의 자 : 김영한 의원 (1명)

찬 성 자 : 성백진, 김태수, 맹진영, 김희걸,
이신혜, 박마루, 이복근, 우창윤,
박성숙, 오승록, 이순자, 박기열
의원(12명)

1. 제안이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과”을 “지난”으로 하고 “준치”를 “보존”으로 하며 “이차보전”을 “이자 차액의 보전”으로 하고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며 “2회”을 “두 차례”으로 함. (안 3조, 제8조, 제10조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경과된”을 “지난”으로 하고 “존치”를 “보존”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이차보전”을 “이자 차액의 보전”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2회”을 “두 차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u>경과된</u> 이후에도 기금의 <u>존치</u>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 <u>지</u> <u>난</u> ----- <u>보존</u> ----- ----- ----- -----.
제8조(자활계정) ① (생략) ② 자활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u>이차보전</u>	제8조(자활계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 ----- <u>이자 차액의 보전</u>
제10조(기금운용계획 등)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u>얻어야</u>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u>받아야</u> ----.
제18조(계정별 위원회의 운영)	제18조(계정별 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

--- 두 차례 -----

-----.